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소개 및 신청방법 안내

2021. 6.

※ 관련규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도명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한국판 멘토 프로그램)

비전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상생협력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및 혁신성장 활성화

제도목적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생산되는 중소기업의 제품을 공공조달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및 핵심 소재·부품 기업의 판로 촉진

신청대상

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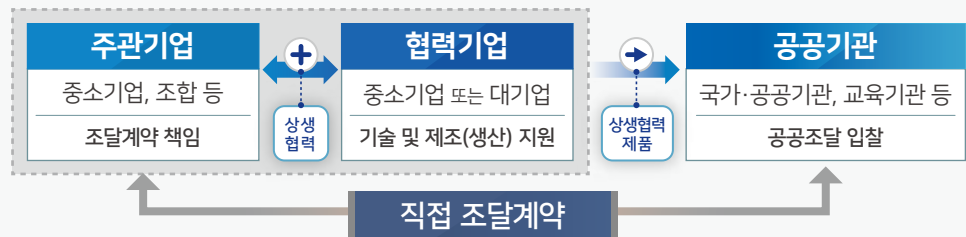
협력기업과 협력을 통해 상생협력제품을 생산하여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또는 단체

협력

주관기업과 상생협력을 통해 공공기관 납품에 일부 참여하고자 하는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참여방법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조달계약 또는 입찰 참여, 협력기업은 계약 일부를 협력하는 방식



지원과제

 혁신성장과제

 소재·부품과제

 기술융합과제

구분		혁신성장과제	소재·부품과제	기술융합과제
기업 자격	주관기업	창업기업 또는 소기업	중소기업 (하단 별표(*) 참고)	
	협력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소재부품 공급)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협력기업 보유자격 (중 1개 필수)		① 신청제품 관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① 소재부품기업확인서 ② R&D사업 성공 소재부품 ③ 특허 적용 소재부품	① R&D사업 성공 제품 ② 특허 적용 제품
신청제품		중기간경쟁제품 (613개)	G2B 세부품명(10자리)에 해당하는 제품	G2B 세부품명(10자리)에 해당하는 제품 또는 목록화 예정인 제품
대기업 참여		참여 불가능	참여 가능	참여 가능
우대사항		① (혁신성장) 중기간경쟁제품 직생 기준 완화 * 협력기업의 직생 증명서 활용 → 주관기업 공공조달 참여가능 ② (공통) 중기간경쟁제품 계약이행능력심사평가 시 입찰가점 부여 ③ (공통) 상생협력제품 구매실적 공공기관 평가지표 반영 ④ (공통)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신청자격 부여		



* 소재부품과제에 참여하고자하는 주관기업은 G2B에 등록된 자사의 제품을 보유(물품목록번호 확인)하여야 함



혁신성장과제

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기술력은 있으나 생산, 품질, 공정기술 등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과제

구 분	신청자격
기업자격	<p>주 관 기 업</p> <p>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p> <p>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기업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p>
	<p>협 력 기 업</p> <p>「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 제품 관련 「판로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참여하고자 하는 협력기업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주관기업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여야 함</p>
신청제품 관련자격	<p>신 청 제 품</p> <p>혁신성장과제에 신청하는 제품은 세부품명번호 기준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여야 함</p> <p>* 중기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 제2021-35호에 따름 (공고일 현재 기준)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공지사항 917번 게시글)에서 확인 가능</p>
협약조건	<p>신청 시 주관기업과 협력기업간 상생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체결은 중소기업간 1:1로 협약 가능</p>



혁신성장과제

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기술력은 있으나 생산, 품질, 공정기술 등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과제

구 분	지원사항·성과지표·평가지표 및 우대사항				
지원사항 성과지표 평가지표	지 원	설비 지원	기술 지원	품질 지원	인력 지원
		기타 협약당사자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사항			
	성 과	매출 향상 및 고용 창출 정도	직접생산의 자립 정도	공정기술 및 품질, 부가가치의 향상 정도	
		제품의 생산능력 및 효율성 향상 정도	인력의 숙련도 및 전문성 향상 정도	기타 주관기업-협력기업간 제시 지표	
	평 가	제품 평가	상생협력 적절성	상생협력 효과	멘토기업의 역량
우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혁신성장과제에 신청하여 선정된 지원대상은 다음 우대사항 부여 				
	직접생산 기준 완화	입찰가점 부여	공공기관 평가지표 반영	시범구매제도 신청자격 부여	
	주관기업(직생 미보유)이 직생을 보유한 협력기업과 협업하는 경우 직생 발급	물품 계약이행능력 평가 시 가점 부여 (중기간경쟁제품 입찰 과정에서 우대)	상생협력제품 구매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각종 평가지표에 제품 구매 성과 포함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신청가능 대상 제품 자격 부여	



소재·부품과제

소재·부품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소재·부품 국산화 및 판로 지원과
중소기업제품의 품질 및 혁신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제

구 분	신청자격	
신청자격	주관기업	조달청 상품정보시스템에 물품식별번호가 등록된 제품 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단체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 따른 각급 조합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 및 허가를 받은 협회 (5개 이상 중소기업 참여)
	협력기업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①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소재·부품전문기업확인서가 유효한 기업 (공고일 기준 유효한 경우에 한함) ②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창업기업) 선정서가 유효한 기업 (공고일 기준 유효) ③ 「과학기술기초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추진된 국가연구개발사업(성공) 과제의 기술이 적용된 소재·부품 보유 기업 (공고일 5년 이내) ④ 등록된 지 7년 이내 특허가 적용된 소재·부품 보유 기업 (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의 등록 유효 특허)
신청제품 관련자격	신청제품	세부품명번호 기준(10자리) 조달청 「상품정보시스템」 등록 품목, 주관기업이 협력기업의 소재·부품을 적용하여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
협약조건	신청 시 주관기업-협력기업간 상생협약 체결	중소기업-중소기업간 참여 1:1 또는 다수:1 협약 가능 중소기업-대기업간 참여 ① 5개이상 중소기업:1개 대기업 또는 ② 단체(또는 조합) : 1개 대기업



소재·부품과제

소재·부품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소재·부품 국산화 및 판로 지원과 중소기업제품의 품질 및 혁신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제

구 분	지원사항·성과지표·평가지표 및 우대사항				
지원사항 성과지표 평가지표	지 원	핵심 기술의 지원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판로 지원	품질 향상 지원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 지원
		기타 협약당사자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사항			
	성 과	핵심 소재·부품 중소기업 판로 지원 정도	매출 향상 및 고용 창출 정도		완성품의 부가가치 및 품질 향상 정도
		외국산 핵심 소재·부품의 국내산 대체 정도		기타 주관기업-협력기업이 제시하는 자체 성과지표	
평 가	소재·부품 평가	상생협력 적절성	상생협력 효과	주관기업 규모 및 기술성	
우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재·부품과제에 신청하여 선정된 지원대상은 다음 우대사항 부여 				
	입찰가점 부여	공공기관 평가지표 반영		시범구매제도 신청자격 부여	
	물품 계약이행능력 평가 시 가점 부여 (중기간경쟁제품 입찰 과정에서 우대)	상생협력제품 구매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각종 평가지표에 제품 구매 성과 포함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신청가능 대상 제품 자격 부여	



기술융합과제

서로 다른 기술·서비스 또는 품목을 보유한 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생산된 융합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

구 분	신청자격 및 지원사항·성과/평가지표·우대사항	
기업자격	주 관 기 업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단체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 제1호부터제3호 따른 각급 조합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 및 허가를 받은 협회 (5개 이상 중소기업 참여)
	협 력 기 업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 ①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추진된 국가연구개발사업(성공) 과제의 기술 또는 기술이 적용된 품목을 주관기업 제품에 접목하여 융합 제품의 생산이 가능한 기업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성공 판정) ② 등록된 지 7년 이내 특허를 보유하고 해당 기술 또는 기술이 적용된 품목을 주관기업 제품에 접목하여 융합 제품의 생산이 가능한 기업 (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의 등록 유효 특허)
신청제품 자격	신청제품	세부품명번호 기준(10자리) 조달청「상품정보시스템」 등록(또는 예정) 품목, 협력기업의 기술 또는 품목을 융합하여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
협약조건	신청 시 주관기업-협력기업간 상생협약 체결	중소기업-중소기업간 참여 1:1 또는 다수:1 협약 가능 중소기업-대기업간 참여 ① 5개이상 중소기업:1개 대기업 또는 ② 단체(또는 조합) : 1개 대기업



기술융합과제

서로 다른 기술·서비스 또는 품목을 보유한 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생산된 융합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

구 분	지원사항·성과지표·평가지표 및 우대사항				
지원사항 성과지표 평가지표	지 원	융합 지원	기술 지원	품질 지원	인력 지원
		기타 협약당사자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사항			
	성 과	융합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혁신 기여도	매출 향상 및 고용 창출 정도		품질, 부가가치의 향상 정도
		인력의 숙련도 및 전문성 향상 정도		기타 주관기업-협력기업간 제시 지표	
평 가	제품 평가	상생협력 적절성	상생협력 효과	협력기업의 역량	
우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융합과제에 신청하여 선정된 지원대상은 다음 우대사항 부여 				
	입찰가점 부여	공공기관 평가지표 반영		시범구매제도 신청자격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품 계약이행능력 평가 시 가점 부여 (중기간경쟁제품 입찰 과정에서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생협력제품 구매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각종 평가지표에 제품 구매 성과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신청가능 대상 제품 자격 부여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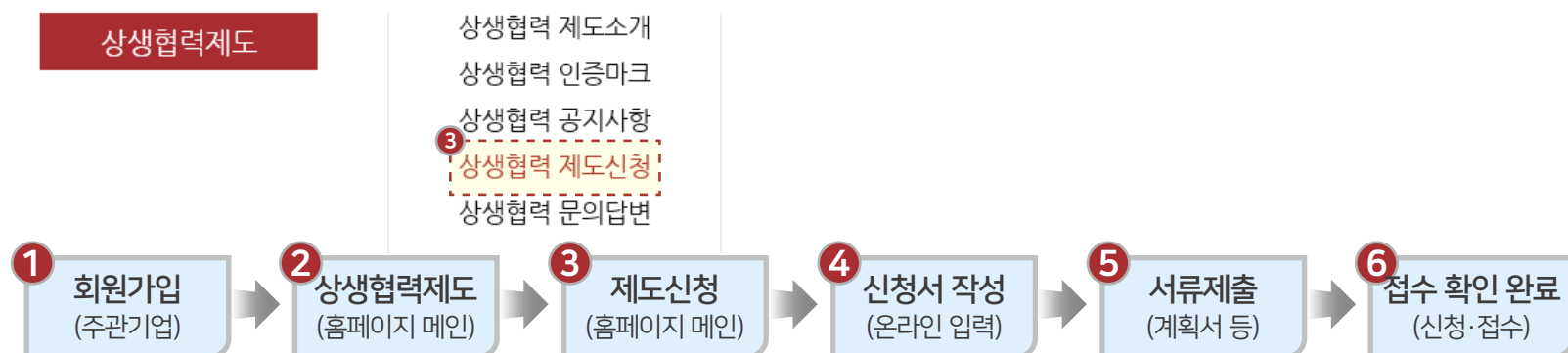
신청기간 (21년 2차) 2021. 6. 16 (수) ~ 7. 30 (금)

- 신청 마감일 23:59까지 「신청서 및 관련 서류」 등 온라인 제출을 완료한 기업의 과제만 인정

02

신청방법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인터넷) 접수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홈페이지 (<http://www.smpp.go.kr> 접속→상생협력제도→ 제도신청) 접수



* 신청 주체는 주관기업이며, 5개 이상 중소기업(또는 조합)이 주관기업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표 주관기업(또는 조합)이 신청

국민과 함께 뛰는 대한민국 경제의 원동력